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6. 2.)됨에 따라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난임휴직 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안 제10조의4, 안 제57조의2)

신설되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직목적이 되는 ‘치료’의 범위와 ‘특별한 사정’ 등 난임휴직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휴직 의무가 대상이 아닌 난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신설함.

나. 비위혐의자 퇴직 관련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안 제10조의4, 안 제60조의2)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허용과 관련하여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

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다.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

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직 여부에 관
한 사항

사.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
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
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휴직(이하
“난임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제60조의2에 따른 법 제78조의4제2항의 퇴직 제한의 필요성 등
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
서 중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을 “다음 각 호의”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의2의 제목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및 난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및 난임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

2. 난임휴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임휴직 기간(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난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이 출산하려는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 이상인 경우

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를 말한다.

④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난임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휴직 및 난임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퇴직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른 퇴직 허용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 제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임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기간과 이 영 시행 당시 난임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난임휴직기간으로 본다.

②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또는 난임 휴직한 기간과 이 영 시행 당시 난임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또는 난임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난임휴직 기간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를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1호마목”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① 임 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제13 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u>제1호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 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u> 1. <u>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 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 의 인정에 관한 사항</u>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①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 ----- ----- -----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u> <u>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 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u> <u>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 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 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 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에 관한 사항</u>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
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다.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
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
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
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
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1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
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

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
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직 여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
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
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
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

가.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휴직(이하 “난임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제60조의2에 따른 법 제78조의4제2항의 퇴직 제한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항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
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
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
항

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직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
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
다음 각 호의 -----

----- 경우에는 -----

-----.

1. 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
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육아휴직)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2(육아휴직 및 난임휴직)

①육아휴직 및 난임휴직 -----
-----.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

2. 난임휴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임휴직 기간(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난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이 출산하려는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 경우

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경우

③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
생식술 등 난임치료를 말한다.

④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난임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제4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에 휴
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
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
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육아휴직 및 난

<u><신 설></u>	<u>임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u> <u>제60조의2(퇴직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른 퇴직 허용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 제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